

●태안해양경찰서고시 제2026-25호

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0조 제1항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6년 08월 10일

태안해양경찰서장

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

1.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

연번	장 소	금지구역	금지대상	금지기간
1	충남 태안군 원북면 학암포해수욕장	물놀이구역 및 물놀이 경계선으로부터 외측 20미터 이내 해상 * 다만, 수상레저사업 관련 부대시설 설치 및 수상레저기구 진·출입로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	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조 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	해수욕장 개장기간
2	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			
3	충남 태안군 근흥면 연포해수욕장			
4	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포해수욕장			
5	충남 태안군 안면읍 삼봉해수욕장			
6	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			
7	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서방파제 인근 해상	① 북위 36도 40분 42초, 동경 126도 07분 24초 ② 북위 36도 40분 42초, 동경 126도 07분 38초 ③ 북위 36도 40분 24초, 동경 126도 07분 47초 ④ 북위 36도 40분 24초, 동경 126도 07분 24초의 지점을 직선으로 이은 선 안의 해역 * 다만,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안흥외항을 출입항 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	모든 수상레저기구	연중

2. 문 의 처: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(☎ 041-950-2851)

3. 참고사항: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64조제1항4호
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4. 재검토 기한: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전 고시 폐지)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-24호는 폐지한다.